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26년 1월 시행)

베트남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적 기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온 개인정보보호 시행령(Decree 13)을 전면 대체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No.91/2025/QH15)이 2025년 6월 26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베트남의 디지털 혁신 전략과 함께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또는 기타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 최근 제정된 데이터 법상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정의(디지털 형태의 음성, 이미지, 숫자, 문자 및 기호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여 사물, 현상 및 사건에 관한 데이터)를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Decree 13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전자적 환경'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Decree 13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는 전자적 환경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외에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도록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기존 Decree 13 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좀더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면서도,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기본정보와 민감정보

기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규정했던 Decree 13과 달리, 개인

Related Areas

베트남

Contact

이명재 외국변호사
+84-28-3911-0225
mjlee@yulchon.com

이홍배 변호사
+84-24-3837-8200
hbvi@yulchon.com

이진우 변호사
+84-24-3837-8200
jinwoolee@yulchon.com

김석윤 외국변호사
+84-96-927-2794
sykim@yulchon.com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형을 기본정보와 민감정보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는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베트남 정부가 마련할 세부 하위규정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정보가 민감정보로 구체적으로 분류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세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식별화 개념 신설 - 데이터 활용 가능성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작업 이후에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식별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처리과정'을 의미합니다.

비식별화에 대한 실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매매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매매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은 사업모델 구축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암호화 개념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암호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비식별화와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보는 점에서 비식별화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암호화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복호화를 진행하게 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의 본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비식별화와 암호화 사이에는 개념과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기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적용 범위 - 외국기업도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베트남 내 외국 공관이나 국제기구 사무소를 포함하는 외국기관, 외국기업, 외국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외국기관, 외국기업,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베트남 영토 내 개인정보보호 활동은 본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에서 설립된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영토 내에서 베트남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나 형사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구체적으로 부과 가능한 행정벌의 최대 과징금 액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법률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약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이 없거나 위반행위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액이 30억동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0억 동 이내에서 하위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직전연도 해당 기업의 매출에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이 없거나 직전연도 매출로 산정한 과징금액이 30억동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0억 동 이내에서 하위 시행령이 규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리 규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베트남 정부가 발행할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시 통지 규정 삭제

기존 Decree 13은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통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Decree 13 상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통지 조항에 관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에도 개인정보 처리시 별도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실제로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초안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내용임에도 최종안에서 삭제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하위 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베트남 정부가 발행할 하위법령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7.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해당되는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베트남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베트남 영토 밖에 위치한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경우
- b)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개인이 외국의 기관, 조직,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 c) 베트남 내 또는 외국의 기관, 조직, 개인이 베트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해 베트남 영토 밖에 위치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개인정보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러 겸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영향평가 서류의 작성을 기업의 전체 운영기간 중 1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서류 작성의무 관련 수행 횟수 및 업데이트 주기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국외이전 영향평가가 면제됩니다.

- a)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국경 간 이전하는 경우
- b) 기관, 조직이 해당 기관, 조직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경우
- c) 개인정보 주체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경 간 이전하는 경우
- d) 정부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8.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 신고 기한 완화

기존 Decree 13은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신고 기한을 위반행위 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로 규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달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위반행위 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9. 분야별 맞춤형 규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 뿐만 아니라 개별 분야에 맞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새롭게 규정 하였습니다.

은행, 파이낸스, 신용정보 분야의 경우 민감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은행, 파이낸스, 신용정보 관련법상 보안 기준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사용하여 신용 점수 부여, 신용 등급 분류, 신용정보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광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광고 내용, 제품 소개 빈도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받아야 하며, Opt-Out 옵션 제공, 개인맞춤형 광고의 경우 어플 추적 금지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경우 쿠키 수집 거부 옵션 제공, 추적 금지 기능 선택권 제공 및 계정 인증 요소로 신분증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 동영상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AI·블록체인·메타버스 클라우드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적절한 인증, 식별 방식과 접근 권한 분할이 필요하며, AI의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분야의 경우 채용공고에 공개되었거나, 제공받은 직원 이력서 내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직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 관리를 위해 사업장 내 기술적 조치를 통해 수집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시 근로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명확히 알고 있도록 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0.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관과 조직에게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정의무 또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조직 고용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서비스에 대한 정의나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부서 및 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구체적으로 규정될 하위 법령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 시행일 및 의무면제 기간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의무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의무, 개인정보보호 인력 지정의무를 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나 개인정보처리 업종과 관련된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대응 필요사항

- 현재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면 점검 (디지털·물리적 정보 모두 포함)
-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현황 파악 및 영향평가 준비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채용 계획 수립
- 분야별 맞춤형 규제 적용 여부 확인

(2) 모니터링 필요사항

- 세부 시행령 발표 동향 (민감정보 정의, 구체적 의무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정보

(3) 준비 기간 활용방안

- 소규모 기업: 5년 의무면제 혜택 활용 여부 검토
- 모든 기업: 내부 정책 및 절차 정비, 직원 교육 실시
- 국외이전 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13.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의 측면에 더하여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개념 도입**은 향후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이 기대됩니다.

동시에 **최대 기업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 규정**과 **분야별 맞춤형 규제**는 기업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법률 시행을 기회로 삼아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유사한 규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